

# 火災豫防과 火災保險

火災保險(Fire Insurance)이란 火災로 입은 災害 및 損害를 多數의 者가 分擔하는 資金을 가지고 罹災者들의 損害를 補償하여 주는 하나의 相互扶助의 制度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들 多數者와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가지고 있는 保險者와의 사이에 火災保險契約이 成立하는 것에 의하여 그 制度가 運轉되는 것을 말한다.

金 寬 治 <業務部次長>

이와 같은 火災保險에 있어서 擔保해 주는 危險과 損害의 範圍는 :

① 保險의 目的物이 燃燒되어야 하고, ② 火災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損害와 ③ 消防 또는 避難에 必要한 處分에 의하여 發生한 損害이다.

우리나라의 火災保險歷史는 1876年 2月 26日에 日本國과 締結된 江華條約을 契機로 하여 開放된 門戶와 그 以後 繼續하여 諸 外國(英國, 露國 등)과 通商條約을 맺은 時期를 契機로 하여 그의 發達을 가져오게 되었다.

各國과 締結된 通商條約의 約定에 따라 日本과 英國은 우리나라에 現代의 金融機關인 銀行과 貿易商社 등이 進出하여 支店을 設置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自己들 國內의 保險會社와 代理店契約을 締結하고 散發의 保險事業의 營爲를 開始하였다.

그 後 이들에 의한 火災保險事業은 그런대로 擴張되어 갔으나, 露日戰爭이 日本의 勝利로 끝나자 日本系 保險會社들 만이 판을 치게 되었다. 그러던 중 日帝治下인 1922年 10月에 와서 우리나라 最初의 損害保險會社인 朝鮮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現 東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의 前身)가 設立되었다. 그러나 1945年 8月 15日 解放 以前까지는 여러가지(資金의 취약, 保險技術의 不足 등) 問題點을 안고 있어, 當時의 保險事業은 그야말로 困境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8.15 解放 以後에 와서 새로운 작오를 가지고 再出發을 본 保險事業이기는 하지만 當時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混亂과 沈滯의 禍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健實化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요컨대 던치다」는 格으로 1950年 6月 25日에 勃發한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火災保險事業은 辛通한 進展을 보지 못한채, 다시 難境에 處하게 되었다.

1954年 7月 28日에 休戰이 成立되고 政府가 서울로 還都하게 되자 차츰 모든 秩序가 回復되어 감에 따라, 政府가 焦土化된 이 나라의 保險市場을 再建하고자 資本金의 增資措置를 斷行함으로써, 이에 힘 입은 火災

保險事業은 다시 活氣를 찾기 始作하였다.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損害保險會社가 14個社에 이르렀으나 經營上의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즉, ① 保險料率體制上의 不合理點의 除去問題 ② 金融機關의 保擔物件에 대한 未收保險料의 累積問題 ③ 保險契約의 效果的인 再保險處理問題 ④ 經費의 過多支出問題 등 經營內外의 諸 問題點이 惹起되었다.

그 後 1961年 5月 16日에 일어난 革命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인 面에서의 多樣한 質的 向上的 變化와 間接的으로는 保險業界에도 多大한 變化를 안겨 주었다. 즉 政府는 保險制度가 國民福祉生活向上에 寄與하는 하나의 公器라는 明目上의 機能을 充實히 遂行할 수 있도록 保險會社를 政府當局의 直接的인 監督의 影響權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保險關係法을 制定하였다. 이에 의한 1次的인 措置段階로서 ① 資本金을 增資措置함과 同時에 ② 不實會社 4個社(韓國再保險, 서울火災, 韓國貿易火災, 安保火災 등)를 吸收合併 措置하였다.

이러한 過程을 밟아 成長發展되어 온 우리나라의 火災保險事業은 아직까지도 損害保險의 主宗을 이루고 있음은 馬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火災保險事業이 成長發展하게 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派生되는 消防設備의 改良, 防火事業의 促進 등을 통한 危險의 改善活動인 啓發의 效果를 別로 거두지 못하였음은 多少의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都市의 人口 密集化, 「빌딩」의 巨文化 내지 高層化 등은 單一危險의 大型化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火災保險契約에 대한 效率的인 技術的 危險分散策의 講究가 切實해 졌음은 勿論, 保險者로서의 事前 火災豫防活動의 積極化가 要講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最近에 發生한 「大然閣호텔」, 「大旺코너」, 「市民會館」 등 大型火災事件을 契機로 하여 그의 切實性이 表面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火災保險企業은 一定한 利潤을 얻기 위한 하나의 商業的 事業이기 以前에 國民經濟生活에 安定을 가져다 줄 수 있는 公益的 社會福祉制度의 하나라는 觀

點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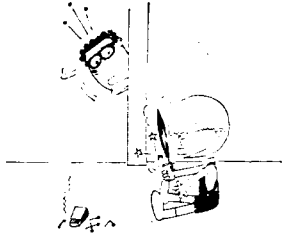
要컨대, 火災가 發生한 後 損害를 補償받아 經濟的 安定을 되 찾는다는 保守的 觀念에서는 保險者는 大型 危險의 保險目的物에 대한 效果的인 危險分散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重要視되고 있지만, 現代의 思考의 觀念에서는 保險目的物에 대한 火災의 事前 豫防活動을 보다 效果的으로 展開하여 火災로 인한 財物의 損失과 人命의 被害를 어떻게 最少限으로 줄일 수 있느냐가 前者의 경우 보다 더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火災保險이란 火災가 發生한 後, 補償節次를 밟아 被害를 復舊하는 制度에서 事前에 火災가 發生하지 않도록 모든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는 制度로 轉換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火災保險이란 事後的措置로서 火災로 인한 災害를 補償해 주는 方向에서 事前의 措置인 火災의 豫防活動으로 危險을 改善해 나아 가는데 資金を 投資하는 方向으로 運營方向이 變遷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最近 서울에서 發生한 數件의 大型火災는 모든 國民에게 새로이 警覺心을 불러 일으켰음은 물론 火災保險者의 立場에서도 새로운 次元에서의 問題點을 안겨 준 重大한 事件이었다.

이러한 大型火災事件은 財産上에 막대한 損失을 가져다 주었음은 물론 人命被害도 엄청난 것이어서 被害를 당한 장본인과 損害를 補償해 줄 保險會社의 立場을 떠나,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에는 그의 切實한 被害狀況에 놀랄다기 보다 우리 周圍에 그와 같은 큰 不意의 危險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事前에 豫測하지 못한 人間의 知력(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모든 國民이 一致團結하여 高度의 經濟成長에로의 발 돋음을 하고 있는 이 때에 이와 같은 不意의 災難으로 인한 經濟物量의 損失은 國民의 間接的인 負擔을 加重하게 할 뿐 아니라 國家經濟成長에 多大한 影響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에 衝擊을 받은 政府當局은 火災保險의 側面에서 事前의 措置인 火災豫防活動을 效果的으로 支援할 수 있는 方法을 模索하기에 이



르렀던 것이다.

火災가 發生했을 경우, 이를 迅速하게 鎮壓함은 勿論 事前的인 火災豫防活動도 消防官署에서 誠實히 行하고 있지만, 國民의 財産과 人命을 앗아가는 뜻하지 않은 不意의 크고 작은 火災는 그칠 줄 모르고 이 곳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수시로 「매스·콤」을 통하여 보고 들곤 한다. 이는 國民의 協助없이 消防當局의 힘 만으로서는 火災의 根源을 완전히 除去한다든가 發生한 火災를 效果의으로 消火作業을 行한다든가 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것을 證明해 주는 것이다.

이에 10個 火災保險 原受社로부터의 出捐形式에 의한 純粹한 民間資本으로써 火災豫防活動을 支援할 수 있는 機關의 設立을 보게 되었으며, 이 設立된(73年 5月 15日) 機關이 바로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인 것이다. 이 機關은 火災保險事業과 關聯하여 消防對策에 技術의 機能을 發揮하여 事전에 火災發生의 危險要素를 찾아내고 이를 是正·改善되도록 措置함을 그의 主業務로 삼고 있다.

특히 이 機關은 「主要建築物」(法에서의 規定에 따르면 “特殊建物”이라 한다)에 대한 事전에 徹底한 安全點檢을 實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業務는 關聯機關 내지 關聯 他業務와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것으로 豫想되나, 그 業務가 一定한 軌道에 올라 正常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段階로 접어들면 그 效果가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安全點檢을 實施하였으니, 과연 火災發生件數가 얼마 만큼 減少되었느냐 하는 式의 成果評價는 抽象的인 것으로 그 評價를 短期間內에 期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한 편 火災가 發生하기 쉽고, 多數人이 出入 또는 常住하는 建物 등(즉 前術한 法에서의 特殊建物을 말한다)은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의 加入을 法에서 義務化시켰다.

要컨대, 火災의 發生을 最少限 줄이기 위하여 事前的인 措置로서, 消防力의 強化策의 一環으로 民營安

全點檢 專門機關을 둠과 同時에 火災가 發生한 後라도 이의 迅速한 復舊로서 經濟的 不安을 除去하는 事後的인 措置로서의 火災保險에의 加入을 義務化시킨 것이다.

따라서 經濟物量의 安全한 保護管理와 人命의 被害를 最少限 輕減시킬 수 있는 最先의 方法으로서의 特殊建物에 대한 安全點檢의 實施와 火災保險에의 加入 義務化는 그 意義가 자못 큰 것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火災保險制度는 事後的인 補償을 行함으로써 그의 經濟的 機能을 發揮함은 물론이고, 보다 前進的인 科學的 方法으로서의 事前的인 火災豫防에 力點을 둔 運營體制에로의 轉換期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結論의으로, 火災로 부터 國民의 財産과 人命을 保護하기 위하여 民營 安全點檢 專門機關(韓國火災保險協會)의 設立과 비록 災難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迅速하게 이를 補償措置할 수 있도록 火災保險加入의 義務化를 國家가 法制化하였다. 이러한 事前的인 措置(火災豫防活動)와 事後的인 措置(火災保險制度)는 恒時 常存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徹底한 火災豫防活動을 事전에 積極的으로 展開한다고 하더라도 火災의 發生을 100%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事後的인 措置로서의 火災保險制度의 利用은 이와 같이 常存하고있는 火災危險에 대한 經濟的 不安을 除去하게 되는 것이다.

原受火災保險會社들의 出捐金으로 設立, 運營되는 純粹한 民營安全點檢機關으로서의 「韓國火災保險協會」는 73年 7月 2日에 重大한 貢務를 안고 그 첫 걸음을 내 뒀다.

이로써, 火災保險側面에 있어 事前 火災豫防措置는 從前보다 훨씬 強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火災豫防活動의 專門機關인 「韓國火災保險協會」가 보다 알차게 前進·成長하여 그에게 주어진 所任을 充實히 履行할 수 있도록 保險人, 消防人 그리고 모든 關係人들의 끊임없는 支援과 協助이 뒤 따라야 하겠다.

# — 韓 國 —

## 世界30大 保險國으로 登場

韓國이 1971년도 世界 30大 保險國에 새로 등장했다.

1971년도 全世界保險料는 1천3백70억「달러」(共産圈除外)로 推算되는 중 1位는 美國으로 7백44억「달러」, 2位는 日本의 1백9억「달러」, 3位는 西獨의 1백3억「달러」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世界 2位를 「마크」하였던 英國은 72억「달러」로 4位로 처졌으며 5位가 「프랑스」로 56억「달러」를 시현했다.

한편 1人當 保險料는 美國이 1位로 3백59「달러」 2「센트」이며 2位가 「카나다」, 3位가 瑞西이고 韓國은 3「달러」1「센트」로 28位를 차지하고 있다.

保險成長率을 보면 「아르헨틴」이 38.7%로 1位, 「브라질」이 38.1%로 2位, 韓國이 28.8%로 3位를 「마크」하고 있다.

1971年 世界保險料

(단위·백만弗)

保險料 成長率(1971年)

順位	國名	保險料	構成比
1	美 國	74,361	54.28
2	日 本	10,867	7.93
3	西 獨	10,302	7.52
4	英 國	7,203	5.26
5	프 랑 스	5,556	4.06
6	Canada	4,448	3.25
7	이탈리아	2,444	1.78
8	濠 州	1,991	1.45
9	홀란드	1,956	1.43
10	瑞 西	1,255	0.92
16	印 度	641	0.47
27	이스라엘	156	0.11
28	比 律 賓	135	0.10
29	파키스탄	125	0.09
30	韓 國	100	0.07
計		137,000	100.00

順位	國名	成長率
1	아 르 젨 틴	38.7%
2	브 라 질	38.1
3	韓 國	28.8
4	이 스 라 엘	27.2
5	이 탈 리 아	24.6
6	西 獨	21.4
7	Venezuela	18.4
8	Finland	17.6
9	Portugal	16.3
10	뉴질랜드	16.0
11	덴 마 크	15.9
12	스 페 인	15.7
15	日 本	15.0
16	英 國	14.6
23	美 國	19.5